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 3. 22 선고 2022가단1288 판결 [공사대금 청구]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먼지날림 방지시설 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 받은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금액 12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22. 1. 1.부터 2022. 8.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전 원고는 피고에게 자재대금 188,8703,520원, 시공대금 123,625,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이후 자재대금을 165,000,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 원고는 2022. 5.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철골 자재대를 제외한 시공대금 중 80,000,000원에 대해,
 - 50,000,000원은 즉시 지급한다.
 - 30,000,000원은 철골공사 완료일(철골 시공 완료 후 발주처의 입회 하에 도면일치 여부 및 시공상태 검측 후 지적사항 보완이 완료된 시점을 철골공사 완료일로 한다) 이후 10일 이내(약 6. 10.경) 지급한다.
 - 40,000,000원은 준공 완료 2주 이내 (7월 20일경) 지급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5. 23. 50,000,000원, 2022. 6. 26.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철골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이 사건 각서가 정한 철골공사를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이 사건 각서가 정한 하도급대금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중 미지급 금액인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3. 2. 4.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자재대금 165,000,000원(160,000,000원으로 최종 약정), 그 외 시공대금 123,625,000원(120,000,000원으로 최종 약정)에 철공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철골공사는 281,250,000원, 전체 공사대금은 440,6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직접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인 E를 통하여 공사를 하였고, 주식회사 D는 위 E에 당초 자재대금으로 약정한 165,000,000원을 초과한 203,480,101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철공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재대금과 시공대금을 포함하여 280,000,000원에 불과한데, 이미 주식회사 D가 203,480,10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80,000,000원만 남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철골공사와 관련한 자재대금과 시공대금을 합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금액을 280,000,000원으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피고에게 자재(165,000,000원)와 시공(120,000,000원)을 구분하여 견적을 말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총 대금이 120,000,000원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자재까지 포함한 철골공사 전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는 점, 2) 이 사건 각서에도 “철골 자재대를 제외한 시공대금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시공’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D가 제3의 업체에 지급한 철골 자재대금 액수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또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액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새미

1)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